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494
----------	-------

발의연월일 : 2025. 5. 13.

발의자 : 한지아 · 고동진 · 서일준

김건 · 진종오 · 조경태

정성국 · 김소희 · 이상휘

유용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보육 관련 급여를 받는 경우 자녀의 수와 관계없이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한도로 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 수에 따른 양육비 부담 차이를 고려하여 해당 비과세 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머목).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머목2) 중 “월”을 “자녀 1명당 월”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 · 보육 관련 비과세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호머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p> <p>1. · 2. (생 략)</p> <p>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p> <p>가. ~ 러. (생 략)</p> <p>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의 급여</p> <p>1) (생 략)</p> <p>2)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9조의4에서 같다)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p>	<p>제12조(비과세소득) -----</p> <p>-----</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3. -----</p> <p>-----</p> <p>-----</p> <p>가. ~ 러. (현행과 같음)</p> <p>머. -----</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p> <p>-----</p> <p>자녀 1명당 월-----</p>

벼. ~ 쳐. (생 략)	-----	벼. ~ 쳐. (현행과 같음)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